

5.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中改正令

大統領令 第13,971號 1993. 8. 30
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[별표 3]중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
이 신설한다.

바.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
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
바에 따라 분납, 연부연납 또는 조
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

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
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
매입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분납, 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
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현재는 저당권설정금액
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납
세의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, 앞으로는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
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